추계예술대학교

2016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구성단위	의원정수	재적의원	참석의원
교 원	2	2	1
직 원	1	1	1
학 생	3	3	2
외 부	1	1	0
회의개최 통보일		2016. 1. 19.	

1. 일 시 : 2016년 2월 3일 (수) 14:00 - 15:00
2. 장 소 : 창조관 8층 소회의실
3. 출결사항
   - ㅇ 참석위원(4인) : 김용배, 권오훈, 조정민, 최소윤
   - ㅇ 결석위원(3인) : 정원철, 한준욱, 전창하
4. 부의안

   제1호 2015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(안) 심의.

   제2호 2016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자금예산(안) 심의.

   제3호 잉여금처리원칙(안) 심의.

   제4호 2015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재신청(안) 심의.

5. 회의내용

   가. 성원보고

   - ㅇ **간사 정현주** 위원출석 점명에 이어 재적위원 7명 중 4명 참석 보고하고 2016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.

   나. 개회

   - ㅇ **위원장** 연이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   다. **부의안 제1호** 2015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(안) 심의.
   부의안제2호 2016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자금예산(안) 심의.

   - ㅇ **위원장** 안건 제1호와 제2호는 추경예산 및 자금예산에 관한 것으로 기획팀 예산담당자의 연이은 설명을 듣고 안건 논의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예산담당자를 입장시키다.

   (김미선 입장)

ㅇ **김미선** 부의안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.
ㅇ **권오훈 위원** 추경예산 중 교원보수-교원급여가 1차 추경보다 감소된 사유와 투자와기타자산지출 중 임의건축기금적립, 장비관리비의 감소 사유를 질문하다.
ㅇ **김미선** 현재 충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예정된 2015학년도에 선발하지 못한 교원이 있어서 교원급여 부분이 감소되었으며, 전산팀 등 외부 계약업체와 업무하는 부서에서 당초 계약 금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로 감소되었음을 설명하다. 임의건축기금적립은 감가상각비 외 농협은행에서 건축기금으로 기탁하는 부분과 이자, 그리고 발전기금이 합하여 임의건축기금으로 적립되었음을 설명하다.
ㅇ **조정민 위원** 2016학년도 본예산에 실험실습비가 감소한 사유를 질문하다.
ㅇ **김미선** 2015학년도에 성악과 오페라 예산 9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실제로는 2천여만원의 실험실습비가 증가되었음을 설명하다.
ㅇ **김용배 위원장** 올해에는 미술대학의 현장학습지원비가 증가하였고, 당초 학과에서 요구했던 예산금액을 거의 반영하였으므로 실험실습비는 실제로 증가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.
ㅇ **최소윤 위원** 난방비가 감소되었는데 올 해 총학생회 사업과 맞물려 난방비의 변동 여지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다. 추가로 직원보수가 인상된 사유를 질문하다
ㅇ **김미선** 난방비는 등록금회계는 증가하였고 비등록금회계에서 감소시킨 것임을 설명하다. 직원급여는 공무원 보수인상인 3%에 근거하여 예산(안)을 작성한 것임을 설명하다.
ㅇ **김용배 위원장** 난방비의 증가 사유가 발생할 시 2016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(안)에 반영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.
ㅇ **조정민 위원** 복리후생비의 감소사유에 대해 질문하다.
ㅇ **김미선** 2015학년도 기관인증평가시에 준비비용으로 잡은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항목이며 2016학년도에는 시설의 일부분만 평가 받으면 되므로 감소시켰음을 설명하다.
ㅇ **조정민 위원** 학생지원비의 감소사유를 질문하다.
ㅇ **김미선** 학생팀에서 요구한 지출예산 중 교내방송비의 다소 감소가 있었고 올 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내부에서 시행하므로 외부 오리엔테이션 시행시 발생하였던 지출 부분이 감소되었음을 설명하다.
ㅇ **조정민 위원** 시설용역비의 증가와 사유를 질문하다.
ㅇ **김미선** 청소와 경비용역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권고와 지적사항이 노동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서 총무팀에서는 2016학년도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유로 업체용역비를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.
ㅇ **권오훈 위원** 기타학생경비의 증가사유를 질문하다.
ㅇ **김미선** 기숙사업체에 지급하는 기숙사비의 수입처리는 기타교육부대수입이고 지출처리는 기타학생경비이며 2016학년도 최초 발생 세목임을 설명하다.

ㅇ **최소윤 위원** 입시수당이 늘어난 사유를 질문하다.

ㅇ **김미선** 수입대체경비로 입시수험료가 증가한 만큼 입시수당과 경비가 늘어나며, 실제로 입시에 드는 비용 외에는 수험생에게 반환해야 함을 설명하다.

ㅇ **권오훈 위원** 원안으로 가결함을 제안하다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동의하다.

ㅇ **전체 위원** 재청하다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다.

부의안 제3호 잉여금처리원칙(안) 심의.

(잉여금처리원칙에 대하여 간사이며 기획팀장인 정현주 설명하다.)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원안이 마땅함을 제안하다. 시간강사료는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잉여금을 직접교육비에 반영하고 그 중 시간강사료에 반영함을 설명하다.

ㅇ **권오훈 위원** 동의하다.

ㅇ **전체 위원** 재청하다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다.

부의안 제4호 2015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재신청(안) 심의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총무팀 담당자의 설명을 부탁하다.

(박종우 입장)

ㅇ **박종우**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8월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룬 내용으로 2016년 1월 1일자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되면서 회부된 내용이며, 법인부담금 중 학교부담 신청금액을 요청함을 설명하다.

ㅇ **권오훈 위원** 법인부담금이 1억임을 언급하고 원안에 대해 동의하다.

ㅇ **전체 위원** 재청하다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기타 의견이 있음을 질문하였으나 기타 의견이 없어 부의안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6. 폐회

ㅇ **위원장** 기타 의견이 없어 2016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잘 개최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인사 말씀을 끝으로 15:00경 본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: 2016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서류 1부. 끝.

2016. 2. 3.

기록 간사 정현주

위원장 김 용 배 (인)

학생위원 조 정 [illegible] (인)

학생위원 최 [illegible] (인)

직원위원 권 오 훈 (인)